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7 | 2023.10.30. (2023.10.23.~10.2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2. 상임위원회 일정
3. 지난 주(10/23~10/27)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10.23.~10.29)

지난 10/10부터 시작하여 3주간에 걸쳐 진행된 제21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국감 초반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논란과 파행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고성과 막말을 금지하기로 한 '신사협정'을 체결하면서 전반적으로 피감기관 감시와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 주요 감사내용들은 아래 「**지난 주(10/23~10/27)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 민간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선언의 후속으로 마련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그간 진행한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산업】 AI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을 위해 분야별 가이드라인 확대 및 민간자율 신뢰성 검·인증 추진, **【기술】 AI 위험성 대응**을 위해 AI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및 AI 평가 데이터 신뢰성 확보, **【제도】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 검토 등 규제개선·제도정립 과제 추진 등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법(행정)예고】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무부), 전 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 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며, 설립 중인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의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10/23-10/29 기간동안 발의된 주요 입법안으로는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추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한무경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이번주에는 지난 국감기간 중 진행되지 않았던 겸임 상임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본문 국정감사 일정 참조)이며, **10/31(화)에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는 지난 국정감사 결과 이행,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등 관련 자료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내년도 국가정책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23~'27)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外) 8
-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배포 (환경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부) 10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노동부) 10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12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국토교통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6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1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2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21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2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한무경의원 등 10인) 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26
2. 본회의 일정	26
3. 상임위원회 일정	26
4. 지난 주(10/23~10/27)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28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6~10.22)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과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대비 시사점
- 유럽 통합특허법원 가처분 제도의 특징 및 Protective Letter의 활용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23~'27) 공청회 개최	2023-10-20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향후 5년간의 국가 융합연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임

융합연구는 기존 분야·주체·국경을 뛰어넘는 미래 사회 발전의 핵심 원동력임. 기존에 없던 분야를 창출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연구로 다양성 창출의 기반이 됨. 또한 단기에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어 도전 가치를 증명해 내는 연구임

2018년에 수립된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은 10년 주기로 수립되었으나, 감염병 위기, 탄소중립, 기술패권 경쟁 등 계획 수립 이후 일어난 경제·사회적 격변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복합 문제의 극복과 미래 선제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융합'이 집중해야 할 영역을 설정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번 제4차 기본계획(안)에서는 융합연구의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나라가 개척해야 할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음. 미래 모습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려보고 밝은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융합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이를 위해 ▲자유롭고 상생하는 '인류', ▲한계와 제약이 없는 스마트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건강수명 증진 플랫폼 등 12개 도전 영역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함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 공청회 요약(안)>

비전

자유롭고 상생하는 인류, 한계와 제약이 없는 스마트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

목표

- 1 융합기술 개발로 국가 복합문제 해결 (12건, ~'27년)
- 2 새로운 응용분야 창출로 신흥시장 개척 기여 (3건, ~'27년)

추진방향

미래를 개척하는 융합기술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1

경계 없는 융합연구

1. 변혁적 융합연구 촉진
2. 글로벌 융합연구의 전략성 강화
3. 초학제형 융합연구 견인

전략
2

견고한 융합 추진체계

4. 융합연구 추진체계 다각화
5. 융합에 특화된 평가체계 확립
6. 제도적 추진 동력 강화

전략
3

진화하는 융합 생태계

7. 융합연구 플랫폼 고도화
8. 협력과 소통의 질적 향상
9. 미래 융합인재 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발표

2023-10-25

-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 참여기업들, 인공지능 신뢰성 강화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 동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 민간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함

※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투자방향,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인공지능 대표급 협의체 운영 (1차 '21.9, 2차 '22.2, 3차 '23.3)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선언의 후속으로 마련됨. 또한 과기정통부는 그간 진행한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민·관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함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은 △민간 자율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 전반 책임있는 인공지능 의식 확산 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모범국가를 위한 내용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산업 발전의 전제로 인식하여 가이드라인 등 자율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구체적 실천수단으로 채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확대하고 민간 자율 신뢰성 검·인증을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임. 특히, AI 사업 중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개발·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부 선정하여 금년 12월에 시범 인증을 추진할 예정임
- ② 인공지능 자체가 내포하는 편향성, 불투명성 등 기술적 한계와 인공지능 오작동 등에 따른 인공지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예정임
※ 차세대생성인공지능기술개발('24~'27, 총 220억원)
- ③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안전에 대한 위험성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24.1분기)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립 과제를 추진할 방침임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와 환경규제에 관심있는 국민을 위해 '2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제 총 249건('23년9월말 기준)을 정리'한 환경규제 혁신을 제작·배포함

※ 6개 분야(△화학물질,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영향평가, △국민체감형 규제, △현장애로)로 나뉘어 있으며,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추진현황 등 수록

이번 핸드북은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음.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환경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4-10-25 시행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4조)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하여야 함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③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 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여야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④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 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및 제13조)
- ⑤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⑥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 및 제23조)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4-04-25 시행
-------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3조제1항)
- ②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제3조제3항 및 제5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4조)
- ④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제6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제7조)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제9조)
- ⑧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연계·신청 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 ⑪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하도록 함 (제14조)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4-04-25 시행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평가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제7조)
- ②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제10조)
- ③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수용 및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함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 ④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 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4-04-25 시행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4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⑥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제14조)
- ⑦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및 제18조)
- ⑨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 (제20조 및 제21조)
-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
- ⑪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국제협력·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27. ~11.23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각 거래에서 취득한 자산(부채)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 (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 문의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화: 02-2110-3635, 팩스: 02-2110-0331\)](tel:02-2110-363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0.23. ~12.4
---------	-------------------	----------------------

전력계통의 안정성 강화 및 전력공급의 유연화를 위해 설치하는 **송전·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송전·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포함 (별표 5 수정)
- ②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보완 (별표 8 수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tel:044-203-3982)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 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며, 설립 중인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의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신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곤충가공업을 위해 가공원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과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 (안 제2조제8호나목, 라목 및 마목)
- ②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사업내용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2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안 제 제26조제2항)
- 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4호가 삭제(‘23.4.11.)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시행규칙 제26조의2를 삭제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 삭제)
- ⑥ 입주기업협의회 설립 기준을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4개 이상인 경우로 완화 (안 제28조제2호)
- ⑦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3조제5항이 제33조제7항으로 개정됨(’19.12월)에 따라 이를 현행화함 (안 제31조제1항)
- ⑧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이 설립 중이고 공장건축면적 또는 건축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을 또는 기준건축면적에 적합할 경우 입주계약사항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영 제18조의2제1항”이 “영 제18조의2”로 개정됨(’20.5월)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함 (안 제35조제1항)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35, 팩스: 044-203-4739)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24.
~10.27.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 (안 제4조제9항)

-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②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 (안 제5조제6항)

-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23.
~12.4.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합병의 심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안 제6조의3)

-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33)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0.23.
~12.4.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합병의 심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출장소 설치 기준 등 (안 제2조)

- 출장소 설치시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 설치시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33\)](tel:02-2100-2993)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2023-10-25 발의
-------	---	---------------

현행법은 법 위반에 따른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나,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정액과징금 상한에 차이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상품대금 감액 금지), 제10조(반품 금지), 제12조(종업원 사용 금지), 제18조(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규모 가격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 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판촉행사를 활성화하여 소비 진작,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요구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 등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11조(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해 3배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안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2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2023-10-27 발의
-------	---	---------------

현행법에서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차입공매도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적임.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렇게 시스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효율성 확보라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3-10-23 발의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택시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의7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3-10-23 발의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으므로 최근의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4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2023-10-27 발의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1인 374만원 등)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생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실효적인 저출생 극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

그러나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서민층에만 적용되고,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오히려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3인)

2023-10-27 발의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경영위기에 처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객관적인 매출자료는 다음 연도에 확인이 가능했고, 특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럼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기반한 신속한 집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후 요건 확인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환수 대상 소상공인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추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안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3-10-27 발의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 공급 특단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 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음

이에 국가·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 현행 타 법률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 (안 제5조 및 제6조)
- ③ 전력망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기획단을 설치 (안 제7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효과성, 주민수용성,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는 경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보전, 지역주민의 안정적 생활보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련 실시계획과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⑥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특례를 적용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⑦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
- ⑧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안 제33조)
- ⑨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도록 함 (안 제34조)

- ⑩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
-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
- ⑫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특례,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10-27 발의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2 신설)
- ②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3 신설)
- ③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④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⑤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안 제34조)
- ⑥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 (안 제39조)
- ⑦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2023-10-27 발의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8년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음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나아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하에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금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음

우리나라는 연간 6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위 국가이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신속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를 받는 대·중견기업의 역할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있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배출량이 적고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하여 제도 및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 (안 제5조)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함 (안 제7조)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기술확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계를 작성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검증기관을 지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활동, 감축량 인증 및 자발적배출권 거래 등을 지원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⑧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보칙으로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3-10-24 발의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크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으로 분쟁 해소도 어려운 상황인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사비 관련 분쟁 저감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29조)
- ② 시공자가 시장·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2)
- ③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 (안 제48조)
- ④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57조)
- 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 (안 제117조)
- ⑥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 방식과 관련한 벌칙 조항 등을 정비함 (안 제11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11/1(수) 1개 위원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서울) / 10:00
11/1(수) 1개 위원회	여가위	여성가족부 등 5개 기관	국회 / 10:00
11/3(금) 2개 위원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회 / 10:00
		국군방첩사령부	국회 / 14:00
		사이버작전사령부	국회 / 국군방첩사령부 감사 종료 후
	여가위	[현장시찰]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00

2.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0/31(화) 10:00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3. 상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전체회의	11/1(수) 14:00	- 법안 의결 - 2024회계연도 예산안 상정 -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법안심사1소위	10/31(화) 시정연설 종료 후	- 법안 심사
행안위	전체회의	11/1(수) 09:30	-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예산안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10/31(화) 11:00	-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2023년도 문체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10/31(화) 14:00	-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아일랜드산/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4. 지난 주(10/23~10/27)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관련	예금보험공사 등 7개	2023-10-24
-------	---------------------	-------------	------------

- 강민국(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3.6조원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기존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
- 윤한홍(국), 전 정부에서 산업은행이 추진했던 대우조선해양 매각,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등이 지체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손실이 발생하고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 특히 전정부 한전의 탈원전 정책이 산은에 영향을 미쳐, 12.3조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기업지원 위한 자금공급여력 61.7조원 감소가 예상됨.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산업은행이 계속 진행하고 있음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대내외적으로 합병한다고 공표한 상태고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재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결정과정에 쉽게 수긍하지 않지만 은행 공식적으로는 이 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윤창현(국), HMM 매각 관련 자금조달계획 중 외부차입비율 제한 여부, 고배당 자금 빼가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한 회사가 없다면 유찰도 고려해야 함
- 오기형(민),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시너지가 없음에도 계속 추진하는데 대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위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이 있음. 이 시점에서는 플랜B, 아시아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함(영구채 관련 이자문제의 해소)

정무위원회	서민금융 지원, 특례보증자리론 등 금융지원정책	예금보험공사 등 7개	2023-10-24
-------	---------------------------	-------------	------------

- 윤주경(국),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중도금대출에 은행만 대상이고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됨. 저축은행도 경우에 따라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
- 유의동(국),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기반기금을 신속하게 만들었으나 조건 등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매우 크므로 기반기금의 대상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송석준(국), 신용보증기금의 재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산업은행의 기업대출 금리인 하요구권 운영실적이 타은행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 필요
- 최승재(국), 파산이나 면책 결정받았지만 5년이 지났음에도 기록삭제가 안되어서 일반보증 발급이 불가해 일반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한도

예금보험공사 등 7개 2023-10-24

- 김희곤(국),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에 대해 예보가 정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한도를 높인다고 가정할 때 효율인상에 대한 입장과, 금융사 등의 부담을 고려해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효율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라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타이밍을 생각할 때 27년 이후가 바람직

정무위원회

규제혁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6

- 김희곤(국), 플랫폼 업체에는 없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배송시간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유통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 이와 관련된 규제개혁이 검토되어야 함
- 송석준(국), 수도권 지역 환경규제, 농지규제, 산지규제 등이 기업 투자를 막고 있음. 기업 투자를 확대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게 범정부적으로 과감하게 개혁과제를 찾고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유의동(국), 공여구역법은 행안부, 평택지원특별법은 국방부 소관이라 법적인 오해와 갈등 우려가 있음.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인만큼 주변 지역 주민이 감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제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6

- 최승재(국), 스타트업 플랫폼이 2021년 9월말 '원플원'을 론칭했고, 네이버는 2021년 12월 중순 비슷한 개념의 '원뽀뽀' 서비스를 시작함. 스타트업이 서비스 홍보를 위해 네이버페이 계약을 한 3개월 후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 개시한 상황을 볼 때 네이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함
- 윤한홍(국),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들러리 업체들만 기소되는 사례들이 있음. 이 과정에서 업체와 공정위 직원간 결탁의혹도 존재함.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 필요함

정무위원회

불법공매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현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종합감사

2023-10-27

- 윤창현(국), 불법공매도로 시장 공정성, 신뢰성 문제 발생. 이제는 투자자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중단하고 공매도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통해 차별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동안 제도 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윤한홍(국), 최근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를 적발.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안됐는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장이 제도개선도 검토한다고 한 만큼 제도개선과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공매도 잠정 금지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이복현 금감원장,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
- 강민국(국), 카카오가 문어발식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를 확대하면서 비판받아왔는데, 금융사업에서도 내부통제의 한계를 드러냄. 특히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가계부채 심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최근의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 ☞ 이복현 금감원장, 취지에 공감.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윤주경(국), 일반투자자 사이에선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소문이 앞서부터 있었고, 대부분 증권사도 영풍제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으로 판단해 증거금 비율을 100%로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음
 - ☞ 이복현 금감원장, 시세조종 불법 거래는 올 상반기에 집중됐고, 금감원은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지난 7월 중 조사에 착수했음. 자료 분석 후 금융위 증선위에 보고한 뒤 검찰에 넘긴 것이 9월 중순이므로 아주 느린 것은 아니고 노력을 다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가계 부채 관련

한국은행

2023-10-23

- 양경숙(민), 가계대출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달라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제가 한 총재로 취임할 때부터 했음. 가계부채는 12년 사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거쳐 늘었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폭될 때 굉장히 많이 올랐음.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 미만, 90% 가깝게 제 임기 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함. 너무 빨리 (가계부채를) 조절하려고 하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음

- 박광온(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것 아닌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리를 더 올리면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음. 그러나 그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물가가 계속 올라갔다면 (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임. 그렇지만 물가가 2.3%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임. 가계부채는 지난 한두 달 올랐다가 9월에 다시 줄었음.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 더 두고 보고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음
- 박광온(민), 금리를 높이면 가계이자 부담이 훨씬 늘어날 텐데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함
- 박대출(국),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속하게 가계대출이 줄었다가 금리 동결이 이어지자 ‘금리가 이제 내리겠구나’ 해서 다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늘어난건 맞음. 가계대출은 미시정책으로 증가속도를 줄이고 GDP 늘려서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는게 남. 경기 문제 때문에 금리 낮춰서 가계대출 늘리게 하지 않겠음
- 홍성국(민), 정부는 빚으로 빚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음. 부실을 미루고 집값을 올리고 빚내서 집사게 한 결과 수도권만 살리게 하고 지방은 썰렁함
- 양기대(민), 한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지난 3월 기준 세계 18위로 미 국채를 갖고 있는 비상국가가 됐음. 미국 편향적 사고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가부도 사태에 방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배준영(국), 한은 관련 차입금문제가 나오는데, 차입실적을 보니 2020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 차입누계액이 102조원이었고 평균 잔고액이 5조가량 됐음. 일시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데, 미래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채권을 찍어내는 것보다 차입금을 운영하는게 낫지 않는가
- 송언석(국), 한국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매매가격 지수하고 KB국민은행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0.4%포인트이나 문재인은 36.1%포인트였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낮춰야 하지만, 금리에 제약이 있기에 규제가 필요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이 되는 차주 비중이 낮는데, 정책당국과 함께 DSR 규제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거시정책을 생각해야함

기획재정위원회

CBDC 도입 관련

한국은행

2023-10-23

- 송언석(국), 중국이 위안화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기로 했음. 지금처럼 정보는 개인은행이 가지고 있음. CBDC를 실제도 도입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나오면 기술적 안정성을 보고 실행할 예정임
- 조해진(국), CBDC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고년층 등의 금융소외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CBDC를 도입해도 당분간 현금을 병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금융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은행들을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기준금리 관련

한국은행

2023-10-23

- 홍영표(민), 한은이 우리나라 금리를 현재 미국처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달라. 정부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해 금리를 유지하도록 한은에 어떤 강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위원들이 정부의 영향을 받아 한 것은 아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위원들이 정부의 영향을 받아 한 것은 아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침체 관련

한국은행

2023-10-23

- 홍영표(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는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1%대 성장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 아닌가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음
- 서영교(민), 현 경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최악의 상황임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악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움.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한 수준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고, 좀 내려가거나 조정될지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음.
내년 성장률은 저희가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 사태 등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여부 관련

한국은행

2023-10-23

- 배준영(국), 올해 주택금융공사에 3000억원 정도를 출자하려던 계획을 축소해 230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축소했음. 특례보증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다르게 신규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가능함. 특례보증자리론을 위한 출자가 적정인지 따져봐야 함. 주택금융공사 출자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하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과 상반된 것 아닌가. 주금공이 추가 출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택금융공사에 저희가 출자한 이유는 고금리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했음. 그런데 이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수요는 별로 없고 이제 특례보증자리론으로 자금이 가서 저희들은 그 목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출자액을 줄였음. 지금 (특례보증자리론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규제를 다시 조이고 있음. 이것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앞으로 몇 개월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됨

기획재정위원회

방산 수출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2023-10-24

- 양기대(민),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움
 -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함. 자본금이 확충될 때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됨.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임
- 서영교(민),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에서 톱 하고 약속하고 왔는데 폴란드 정권이 교체함. 이전 정권과 협상했는데 그 돈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안전장치는 마련했는가. 향후 대책을 가져오라
 -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20%, 중소기업만 15% 정도 하고 있음. 무기 지원 약속한 건 18억불이고, 집행액은 2조원 정도 됨. 방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덜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 위탁 운용사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2023-10-24

- 정태호(민), 올해 전체 위탁 자산이 550억 달러인데 국내 운용사는 6억 달러 뿐, 비율로 보면 1.10%임. 한국투자공사법의 설치 목적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해외투자 전문 인력 양성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 ☞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국내 운용사 실적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상황임. 운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로 협의를 해보겠음
- 박광온(민), 국내에 지사나 법인을 두지 않는 해외 운용사들은 고용과 납세에 전혀 기여하지 않음. 대체자산 위탁 운용사들이 작년에만 수수료로 2조7000억 원을 가져갔는데 국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
 - ☞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운용사 선정시 가점 5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관련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 등
종합감사

2023-10-26

- 홍성국(민), 성장률이 나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은 별로 없음. 한은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 변수를 반도체 가격, 중국, 중동으로 봤는데 중동 변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중국 회복은 안 좋아지는 측면이 강하고 반도체 부분은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시각이 강한 것 같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3분기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이 발표됐는데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함.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실적치는 0.6%로 나왔음.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속보치)는 전기대비 0.6% 성장했음.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관련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7

- 윤영석(국), 3·4분기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음.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좋게) 나오고 있음.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음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음. 올해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가 부진했던 것 같음. 설비투자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함
- 이수진(민), 전날 발표한 비제조업 현황 BSI가 6포인트나 하락한 71로,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미국 국채 금리도 5%대를 오가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 1.4% 달성도 어려울 것임
- 홍영표(민),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이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임. 지금 잘 돼가고 있다,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조세 문제도 국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당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함

기획재정위원회

재정 운용 방향 관련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6

- 홍영표(민), 고령화 문제 등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 재정을 더 확대해야 함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지출 늘리자는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지출을 늘리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늘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해야함. 재원 조달 방안이 있을 때 지출을 늘려야 함. 재원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지출과 관련해 늘 적자의 크기로 나타나고 그것이 부채로 연결됨. 늘 재정 운용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현재 최적의 조합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건전재정인가 이런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관련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6

- 조해진(국), 해외직구 규정을 악용해 대형업체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해 수십억 또는 수백 억원의 밀수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명의대여 행위죄의 적용범위를 늘린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함
 - ☞ 고광호 관세청장,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 등 신속하게 사후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을 검토 중임.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재부와도 상의를 해 나가겠음
- 진선미(민), 액상 전자담배에 담긴 니코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관세청 직원이 2019년 7월 액상 니코틴을 제조하는 사업체와 중국으로 출장을 갔음. 직원과 함께 간 사람을 보면 허위 신고하고 나중에 적발돼 폐업을 한 업체 대표가 포함돼 있음.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갈 때 이해관계자가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있는가. 결국 개별소비세를 과세전 통지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그 사이에 업체들이 다 폐업을 했음. 몇백억씩 다 날렸음.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폐업한 업체들이 다시 재개업을 했음. 관세청에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발동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함
 - ☞ 고광호 관세청장,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음. 바지사장과 고의 폐업 등에 대해서도 보겠음

기획재정위원회

주류세 관련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6

- 윤영석(국),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6천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8천원 정도 됨. 세제가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함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음
 - ☞ 고광호 관세청장, 기준 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음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 관련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7

- 정태호(민), (소상공인·자영업자가)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음.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함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함. 방향성에 관해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음.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지원을 한 것임

기획재정부위원회

제2금융권 안정 관련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
종합감사

2023-10-27

- 양경숙(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제2금융권 부실 사태에 한은을 동원하고 있음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제2금융권 안정화에) 한국은행을 동원한 적이 전혀 없음. 대한민국 시스템이 중앙은행을 동원한다고 동원해질 것도 아니고 그런 발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함. 현재 대체적으로 건전성·유동성에 문제가 없음. 자칫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이야기하면 또 시장의 불안 심리를 불필요하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된 가운데 논의를 했으면 좋겠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2023-10-24

- 김병욱(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찬성하는가
 - ☞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적극적으로 환영함
- 하영제(국), 항우연을 사천으로 옮기거나 연구기능 잠식하지는 않을까?
 -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음
- 장제원(국), 우주항공청이 R&D를 기획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반대한 적 없으며 기획이나 정책을 넘어서 R&D를 실제 실행해도 됨.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 온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게 항우연의 입장임
 -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항우연이나 천문연 측에서 우리는 우주청 밑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함.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과 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첫 과제로 논의할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구글 망 이용료 납부 전무 및 동의없이
위치정보 수집방송통신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2023-10-26

- 김병욱(국),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글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0원'임.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임
 -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망 이용료 부과, 다른 이른바 어떤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허은아(국),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에 제 위치정보가 기록되고 있었음
 - ☞ 이동관 방통위원장, 구글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실태를 조사하겠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애플 한국 홀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2023-10-26

- 하영제(무), 애플 단말 가격, 배터리 교체 비용 등이 타국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다
 - ☞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실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메타 국내대리인 유명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2023-10-27

- 박완주(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올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정식 설치했지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연락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냐. 국내 사업자가 이렇게 제출했으면 가만뒀겠냐”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올해 법이 7월부터 시행돼 점검하고 있고, 불법 사례 있으면 시정조치 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겠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2023-10-27

- 윤두현(국), "통상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말할 때 단말기 가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고가의 단말기만 출시한다는 지적이 있다"
 -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올해 안에 30만~80만원대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 "한국에서 11개 중저가 모델을 운영 중이고, 29만~79만원으로 가격의 폭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12월 전에 KT와 40만원대 중저가 폰을 출시할 계획"
- 변재일(민), "단말보상판매프로그램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비용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한국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 허은아(국),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리뉴드 단말(리퍼폰)을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만 팔고 있다"
 - ☞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 "한국에도 동일한 리뉴드 폰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
- 장제원(국), "현재 요금제 단가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나. SK(텔레콤)의 수익에 비해서 국민 부담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나?"
- 박완주(무),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 ☞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부분은 자율 시행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5G 품질 논란) "빠른 속도로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올해 법이 7월부터 시행돼 점검하고 있고, 불법 사례 있으면 시정조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겠다"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의료원 지원

충청남도 등 4개 기관 2023-10-23

- 강병원(민), 충남 4개 의료원 기능 특화 보고회를 작년 11월에 가졌는데 천안은 소아병원 소아과, 통합의료원은 어린이 병원 기능 특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각되는데 홍준표 前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적자로 폐쇄하였는데, 지금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있어 지사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시설장비비, 인건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
 - ☞ 김태흠 충남도지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적자가 나도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으로 손실을 줄이도록 하고 이익, 손실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 운영

행정안전부 외 5개 기관 2023-10-26

- 김웅(국), 새마을금고 대출잔액이 3년전 112조에서 200조로 증가하였고 이중 부동산·건설 대출 연체율은 8.75%(전체 5.33%)에 이릅니다. 특히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물류센터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보여짐. 금감원은 여력이 없어 보이고 행안부는 잘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성만(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 걱정스러우나 한편으로는 금고의 기능적 책임을 이해해야 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역금융이 새마을금고이며 리스크 있는 지역의 중요사업에 새마을금고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금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도 역할을 해야함.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축감염병 확산 관련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 촉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2023-10-23

- 최춘식(국), 엇그제 발생한 소 렘피스킨병은 폐사율 자체도 10%미만으로 미미한데 그 소만 살처분하는게 맞지 않는지? 살처분시 보상금 문제가 나온다. 농가가 어려운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
 -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렘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리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 아니고,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될 것.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접종 후 항체형성이 되는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하겠음
- 정희용(국), 최근 5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5천억원을 넘고 있음. 현재도 소 렘피스킨병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음. 매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예상지역 검역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 통해 농가들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홍문표(국), 20일 발생한 소 렘피스킨병 젖소 및 한우도 모두 포함되죠? 지역구가 바로 인접 지역이라 예의주시하고 있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므로 총력 대응해달라
 -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현재까지 14곳, 630여건 살처분. 어제 고위당정에서도 특별교부금 지원 신속히 결정하였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자원개발 부진 관련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 2023-10-24

- 김경만(민), 하베스트 등 주요 해외사업의 부실로 인해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됐음. 석유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베스트를 매각하고 있지만 17개월이 지난 지금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음

-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하베스트 매각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헐값 매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그러나 자산이 노후자산이 되어서 가격의 수준에 저하는 있을 것임
- 정청래(민), 석탄공사는 이달 안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400억 정도 규모로 (몽골탄 광사업)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그 탄광은 휴광됐음. 이렇게 하면 안됨
- ☞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점, 중국의 수출도 가능한 점 등 미래가치와 인프라 개선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치가 낮게 평가됐음. 매입한 비용에 상응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을 진행하겠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스공사 적자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

2023-10-24

- 정일영(민), 13조원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됨. 결국은 가스요금을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서민들에게 난방비 부담이 되니 안 올려야 하지만, 공사의 부담이 크니 올릴 수 밖에 없음. 공사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책이 필요함
-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요금 인상은 필요하며, 현재 정부와 논의 중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경영정상화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2023-10-26

- 김한정(민), 전임 이창양 장관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방문규 장관의 태도가 모호함. 그 사이 바뀌었나?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바뀐적 없음. 요금정상화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음
- 김한정(민), 대통령은 민생을 챙긴다는데 장관은 전임 장관 탓하는 것인가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임.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에 적자가 났음. 그때 왜 말씀 안 하셨나
- 정청래(민),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요금 인상 여부를) 물어보니 인상해야 한다고, 방문규 장관에게 물어보니 신중한 접근 이야기하며 사실상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필요함.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진행 중임

- 정청래(민), 전기요금 결정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나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전은 수요자 입장이고 산업부에서 결정함.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함
- 정청래(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지난번에 말한 '신중한 접근'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요금정책 외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CF (무탄소연합)

산업통상자원부

2023-10-26

- 김성환(민), 제가 보기에는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100m 달리기 마라톤 하겠다고 하는 얘기랑 비슷해 보임. 사실은 원전을 늘리기 위한 알리바이 아닌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CF 개념이 등장한 것임.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꼴찌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2030년에 30%에서 21%로 줄이고 그 공간을 원전으로 채우면서 CF 연합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음. CF 취지에 부합하려면 유럽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원전은 브릿지역할로 활용하고 석탄은 줄여야 함.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의 기후대응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음. 한국의 신 재생에너지 목표인 21%를 달성하는 것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해야지 달성 가능한 숫자임. 한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노력을 거꾸로 한다고 얘기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 김성환(민), CF100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줄일 것이 아니라 50%, 60%까지 더 빠른 속도로 높이고 현재 변화하지 않는 석탄발전소나 LNG 발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하에 CF100을 해야 함. 그렇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줄인 후 나머지 공간에 원전을 채우겠다는 발상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람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

보건복지부 등
감사대상기관 전체

2023-10-25

- 서정숙(국),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약분업 이후 18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있음. 복지부와 의료협의회 논의 예정으로 알고 있음. 진료의 대기시간, 서비스의 질 저하 은 보건의료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지금이 골든타임임.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양성에는 10년이 걸림.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증원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의사수 부족 데이터 중심으로 의료계와 잘 논의해 주기 바람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정원에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음. 여러 가지상황들을 고려하여 2025년 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서영석(민),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음. 필수의료 강화해서 어디에서든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방안으로 의대증원 관련 한의대·한의전 750명, 지역 의사제 300명, 특수전문분야 의과학자 100명 제안함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관련 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겠음
- 조명희(국), 의대정원 확대(필수, 지역의료 수가 상승)관련 실천력 있게 수가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수가 협상제도 특히, 현장과 괴리된 협상체계 개선이 필요함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법제화 제도화하도록 하겠음
- 김미애(국), 필수의료 정상화 절호의 기회임. 필수 의료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임. 해외 필수의료 수가 등을 비교해서 반영해야 함. 활동 의사 수 대비 기소 및 유죄 비율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매우 높음.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중시가 필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버티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함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외의 필수 의료 수가 관련 기계적인 평가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서 정책패키지를 만들겠음
- 전해숙(민), 필수 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전공을 포기하고 있음.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노력을 해야함. 지방에 의료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대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문재인 케어가 포플리즘이라고 생각하는가? 뇌 MRI건보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뇌 MRI 급여가 국민의 개인 의료비를 줄여줬음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의 의료인력 확충은 동의함. 보장성 확대에는 기여
- 정춘숙(민), 건보의 특사경 촉구, 법사위 계류되어있는 관련법 21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 의대증원 관련 640명 늘리는 것은 미미한 효과를 볼 것임. 1,000이 넘어야 할 것임. 조속하게 규모를 발표해 준비해야 할 것임.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것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내야하고 모수·구조 개혁도 필요함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총정원 수요 파악해야 함
- 강은미(정), 소수 사립대 지원이 우려됨. 이번 의대증원 관련 사립대를 고려하는 것은 반대임. 지역의료가 아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벌어진 실패한 정책임. 공공병원을 최소한 30%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목표를 내야 의협도 설득될 것으로 보임. 의무복무 방안에 대한 의견은?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면 문제이지만 의대 증원 관련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 수요조사를 통해 총정원을 정해야 함. 의무복무 관련은 의료계 반발이 심했음. 제도적 방안은 생각하겠지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함
- 김원이(민), 내일 수요조사 발표 어떤 내용인가? 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가야 함. 의대가 없는 전남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방의료를 채우려 하는 것임. 전국 40개 의대 중 입학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가 17곳이나 됨. 미니 의대 증원만 갖고는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 의대가 없는 곳에 의대를 설립 요청 및 지방 국립대 5곳 의대 설립 검토 바람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가 늦어진다는 걱정이 많아서 수요조사 계획을 발표하려고 함. 25년에 반영하고자 조속하게 하려 고함. 현행 의대가 있는 대학 위주로 할 것임

- 김영주(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의대 증원 관련 연말까지 논의하겠다는 발언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할 것임. 연말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생각임. 대통령 발언이나 그동안 장관 발언한 것에 배치되는 의견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5년 정원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당의 생각은 알아봐야 할 것 같음. 수용 능력을 조사하고 하겠다는 의견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기관

2023-10-23

- 이수진(민), 파킨슨병 산재신청에 대해 공단에서 불승인을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근로자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아 항소를 하였음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파킨슨 등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산재건의 경우 항소가 불가 피한 측면이 있음

- 노웅래(민), 업무보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연착륙을 위해 감축로드맵을 이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를 막는 건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감독관이 혐의 입증할 수가 없어 수사가 장기화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 현장에서 혐의 입증과 법 적용이 돼야 함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내부적으로 TF를 통해 준비하고 있음

- 노웅래(민), 적어도 구체적인 사망사고 내역과 원인, 위반 법령, 처벌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면 현장감독관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업은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임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재해 원인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오랜 숙원 중 하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노력하겠음

- 김형동(국), 산재 (보장) 기능이 활성화한 것은 노동 현장이 반길 부분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못 하는 점은 이사장이 책임져야 함. 현장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노동부가 자기 식구를 못 챙기면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 과정 재설계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관련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임

- 이학영(민), 최근 사망한 노동자의 소속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초기에 직접 고용을 했지만, 최근엔 위탁업체로 바뀌 특수 고용을 하고 있음. 쿠팡 측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 사고에 대해) ‘어쩌라는 거냐’ 말하고, 정부도 노동자 신분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함. 이런 와중에 노동자들은 계속 사망하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야간근로, 장시간 노동 등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특수건강진단 등 법적 보호 필요
 - ☞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현재 특수 고용 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저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은주(정), 신청은 급증하고 있지만 처리 기간이 늘어나 피해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사람이 일하다 골병나면 한 곳만 아픈게 아닌데 복수 근골격계 질환을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점점 높아져가는 산재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추정의 원칙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업무와 발병률이 이미 확인된 질병들에는 신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할 기준을 수립해야 함
 -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처리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산재보험의 큰 문제점임. 주로 행정직이다 보니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림. 복수상병 인정도 공감하는 문제지만 아직 해매는 부분이 있으며 체계적으로 분석해주신 내용을 깊이 고민해 의논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 산재 정보공개 관련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기관

2023-10-23

- 진성준(민),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자 속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만 그냥 ‘통계’에 불과하고, 그것도 다발 사업장만 정보가 제공됨.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줄 수 있음
 - ☞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2026년 산재예방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 전이라도 법이 개정 되면 고용부와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겠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0-26

- 진성준(민), 배달기사 수입이 줄고, 무리한 배달로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특히,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3사가 대폭 증가. 적정배달료를 산정하여 시행할 필요함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윤건영(민), 대유의 500억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이 3월부터 보도되고 이슈가 되었는데,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8월임. 장관이 제대로 보고 받고 있는지?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사항을 문서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지시와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K-PASS와 기후동행카드 비교 및
확대 논쟁

서울특별시, 경기도

2023-10-23

- 권영세(국),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으로 유인해서 탄소를 저감시키는 매우 좋은 정책. 다만 시범사업이 1인당 6만5000원으로 지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생각
 - ☞ 오세훈 서울시장, '마음같으면 대폭 낮추고 싶지만 재정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추가 옵션을 구상 중. 할인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또한 11월 인천에서 서울·경기·인천 국장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 허종식(민), 경기도·인천시와 단 한 차례 회의 후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의 일방통행이 다른 지자체의 불만을 사는 등 지자체 간 사전협의 미흡
 - ☞ 오세훈 서울시장, '시간이 더 있었어도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웠을 것. 논의를 지속하다 보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이 힘들 것으로 판단.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기는 힘들다고 봤으며 좀 서둘러 발표하고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은 시범사업 때 보완하는 것이 더 빨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30(월) 10:00	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	이용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30(월) 10:00	[노동개혁을 위한 토론회(1차)] -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10/30(월) 10:00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 -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	권명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30(월) 14:00	[국회물포럼 제24차 토론회] - 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 포럼	변재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30(월) 14:00	국산밀 산업 및 소비 확대 토론회	이원택 · 이달곤 · 조해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30(월) 14:00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환자친화적 약물전달기술 개발 필요성에 관한 정책 간담회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실
	10/30(월) 14:00	한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정진석 의원실, 한 일의원연맹	의원회관 4간담회실
	10/31(화) 14:00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 7차 - 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는 어디로	이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10/31(화) 14:00	잔디산업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론회	서삼석 · 신정훈 · 이개호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31(화) 15:00	E&E FORUM 제2차 세미나 -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기반 구축	정우택 · 김희국 · 정일영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수) 10:00	제22회 KASSE 포럼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전망 : 과학기술의 발전 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김영식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1(수) 10:00	제11회 2024 나라예산 토론회	김주영 · 민형배 · 양경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11/1(수) 14:30	2023 경기해양레저포럼	소병훈 · 김주영 의원실, 경기도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목) 09:30	인공지능(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목) 10:00	포털·플랫폼, 가짜뉴스 방지 이대로 좋은가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목) 14:00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정책 토론회	박성준· 김종만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목) 15:00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한정애·유익동· 임종성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목) 16:30	커먼스 펀드: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김성원·민병덕·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3(금) 13:20	제1회 외교광장 연례포럼 - 동요하는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조정식·김상희· 윤호중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0/3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4호(2023-22호) 발간 -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Chips Act)」	국회도서관	국가전략 정보센터
	11/1(수)	「금주의 서평」 제651호 발간 - 도서명: 우울증은 어떻게 병이 되었나? - 저 자: 기타나카 준코		
	11/2(목)	「World&Law」 제2023-20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플랫폼 노동		
	11/2(목) 15:00	제8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과 도전		
	10/31(화)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31(화)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10/31(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 발간		
	10/31(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발간		
	10/31(화)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 발간		
	10/31(화)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10/31(화)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1/1(수) 13:30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3(금) 09:30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30(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1호 발간 -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20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23(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발간	국회사무처	
	10/2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3호(2023-21호) 발간 -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	국회도서관	
	10/25(수)	「금주의 서평」 제650호 발간 - 도서명 :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 - 저 자 : 스테파니 그린		
	10/25(수)	「Data & Law」 2023-10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플랫폼 노동		
	10/26(목)	「현안, 외국에선」 제69호(2023-19호) 발간 -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		
	10/23(월)	「NABO 경제동향」 제39호(10월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23(월)	「NABO FOCUS」 제64호 발간 -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10/24(화) 09:00	「탄소중립 국제포럼」 개최 - 유럽의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3(월)	「Futures Brief」 제23-17호 발간 -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23~10.2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24(화)	ESG	금융감독원,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10/25(수)	자동차·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
10/25(수)	환경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과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대비 시사점
10/27(금)	지적재산권	유럽 통합특허법원 가처분 제도의 특징 및 Protective Letter의 활용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